

Md.b.10

제 3 회 전 국 농 아 인 대 회
(주제별 토론회)

- 일시 : 1999년 6월 2일 09:00~16:30
- 장소 : 서초구청 강당

주최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 3 회 전 국 농 아 인 대 회
(주제별 토론회)

- 일시 : 1999년 6월 2일 09:00~16:30
- 장소 : 서초구청 강당

주최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목 차 ◆

농아인과 인권 (09:00~12:30)

인권이란 무엇인가? -장애인과 인권-

-----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실장)

사례1. 교육현장에서의 인권침해 ----- 이종민 (한국농아인협회 기획과)

사례2. 수화통역을 통해 본 농아인의 인권

----- 이경례 (전남농아인협회 과장)

사례3. 한국사회 농아인의 문화 참여

----- 강재희 (씨뿌리는사람들 대표)

농아인실업과 재교육 (14:00~16:30)

농아인의 이·전직 요인 분석과 대책

----- 이상욱 (대구대 직업재활과 교수)

농아인의 직업재활동향과 대책

----- 김종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차장)

농아인의 직업육구 조사 및 재교육방안

----- 이정자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장애인과 인권-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보
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잘 알
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그 기억을 떠올리는 데 필요한 도움만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게 평등하고도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전세계 자유와 정의와 평
화의 기본이다.”

-세계인권선언 머리말 중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치는 침범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중에서

1. 모두가 소중한 사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고 함부로 취급당할 때면 누구나 속상하기 마련

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소중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지, 경멸받고 차별받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직장을 잃고 어깨가 축 늘어진 사람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아이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볼 때면 괜히 우울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무언가 '정의롭지 않다', '부당하다',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을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생각이 바로 인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부당한 횡포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일과 여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체의 자유',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등 권리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인권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깨닫기까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진리가 될 때까지 인류는 오랜 세월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돈과 권력, 높은 신분을 가진 소수만이 '소중한 인간'이었을 뿐, 그의 다수 사람들, 즉 노예와 노동자, 여자, 외국인, 원주민(선주민), 아동 등의 고통과 신음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수의 특권으로 다수가 고통받는 차별과 불평등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추방당하거나 가족과 목숨까지 빼앗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할 인권'을 법과 제도, 정책 등을 통해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인간이 모두가 존엄한 존재라는 관념에 따라 실정법(實定法)을 통해 국가

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습니다. 근대초기에는 모든 인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인민의 동의를 위반하여 인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갖는다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분질서에 따라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던 봉건체제를 타파하고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근대시민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대시민혁명을 거쳐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평등과 의회민주주의가 발전, 정착되기 시작했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신체, 사상과 의견 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들이 인권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대시민혁명의 이상은 반쪽자리 인권에 불과했습니다.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역사는 이제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근대시민혁명의 이념은 오직 '백인, 남성, 그리고 자본가'만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에 국한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여성들과 흑인노예, 세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력자라는 이유로 투표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동안 고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쥐꼬리만한 임금밖에 받지 못했으며 가혹한 노동조건 하에서 힘든 노동을 계속하다 젊은 나이에 쓰러져 갔습니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근대시민혁명의 이상이었던 평등은 현실에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시장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자유방임주의'적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민중들의 분노가 쌓여가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성장해 갔습니다. 급기야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자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일정한 사회개혁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체제내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진척시킬 수 있는 권리들이 '사회권'의 이름으로 인권의 영역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각종 복지정책이나 자신의 힘으로는 '자유와 빵'을 획득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예제도의 공식적 폐지, 여성의 참정권 획득,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 등을 통해 과거에는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흑인과 여성, 노동자 등이 새로운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만 보장되었던 사상의 자유, 정치적 참여의 권리, 표현의 자유 등도 점차 그 보장 범위를 확대해 가기 시작합니다. 국가에 대해 인권의 보장과 확대를 요구하고 국가를 통해 인권보장의 조건을 마련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이렇게 일정한 평등과 자유를 성취해나가는 동안 대부분 이들 나라의 식민지였던 제3세계의 민중들은 빈곤과 독재권력의 폭압 속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국민들이 누렸던 인권은 제3세계 민중들의 희생을 그 대가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적 불평등과 모순을 의식하기 시작한 제3세계 민중들은 자결권과 발전의 권리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민지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제3세계도 서구 선진국과 같은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자기 나라가 가진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그리고 전 인류가 함께 이룩한 공동의 유산, 즉 과학기술과 정보, 문화 등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구촌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살펴봅시다. 지속적인 인종차별, 여성차별,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전지구적 생태위기 등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인권문제들은 결코 한 나라나 한 민족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열대림이 훼손되는 것이 곧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낳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전지구적인 권력과 자원, 가치의 재분배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경을 초월한 단결과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지금도 새로운 인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늘 변화되는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해 갖가지 불평등과 차별, 억압을 극복하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인권의 성격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처한 처지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대개가 동의하는 인권의 성격이 존재합니다.

1> 인권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권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에는 이런 말이 전혀 통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저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빼앗기고서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2>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어떠한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3> 인권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인권의 등장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은 국가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국가권력은 권력자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가치를 지닌다'는 원칙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권력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사용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정부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잣대가 필요하며, 그 잣대가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의 보장이야말로 권력이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에, 국민은 인권을 억압하는 권력에 언제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권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4>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

우리는 흔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만이 인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법'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과 같이 인권을 억압하는 법이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권력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법이 충분히 인권을 보장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현재 우리의 법은 매우 무력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만 한정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이 보장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필요한 권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인권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인권은 법보다 우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이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리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부당한 법과 명령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복종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의 지위나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지만, 보다 귀한

양심의 법과 인권의 원칙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 인권은 상호분리될 수 없고 상호의존한다.

우리의 인권은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한 민족의 권리는 다른 민족의 권리와, 한 나라의 권리는 다른 나라의 권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는 곧 나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나찌즘이 지배한 독일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들과 장애인, 노동자들이 피의 순수성을 위한 제물이 되어야 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나찌가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침묵한 결과 나머지 사회구성원들의 인권도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공포정치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와 코소보에서 학살이나 폭격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그들만의 인권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인권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인권만을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공동의 이익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권은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골고루 보장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인권은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3. 이것이 바로 인권!

많은 사람들이 인권, 인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경기의 규칙을 모르면 경기를 할 수 없듯이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나의 권리를 침해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

언을 중심으로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1> 인권보장의 원칙

●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 차별은 안돼! :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따라서 모두가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데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2> 자유를 위하여!

● 생명과 안전의 자유 - 안심하고 살아간다! :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 전쟁과 폭력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질병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 생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노예는 없다! :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오늘날 전통적인 형태의 노예제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라졌지만, 어린아이를 가혹한 노동에 종사시키는 일,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자들을 강제로 노동시키는 행위, 여성에게 강제로 매춘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사람을 노예와 다름없는 속박의 굴레에 가두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고문받지 않을 권리 -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자백을 받아내거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가해지는 수사기관의 고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인간성을 짓밟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또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우하고 반인간적인 형벌을 가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고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고문은 '밤샘 수사'이다. 사람을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 가두는 행위, 오랜 시간동안 독방에 가두는 행위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져오는

●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누구나 똑같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 자의적인 체포·구금·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법률에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처벌받아서는 안되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판은 공정하게! :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 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 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잡혔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누구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 사생활의 자유 -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누가 나의 대

화를 엿듣거나 함부로 나의 편지를 검열하거나 내 사진을 찍어서는 안된다. 또한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이동 및 거주 자유 -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난민의 권리 -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 누구나 자기나라에서 괴롭힘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내가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했을 때, 그 나라는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 곳으로 나를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되며, 난민의 지위에 있을 때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 양심의 자유 -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누군가 나의 생각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요해서도 안되며,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서도 안된다.

● 표현의 자유 -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누군가가 부당하게 나의 표현물을 미리 검열해서 삭제해서는 안된다. 또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정보에 접근하고 알 권리는 나의 생각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데 기본이 된다.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모일 수 있다! :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

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어서는 안되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모임의 결성을 불허해서는 안된다.

● 참정권 -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 우리는 모두 선거를 통해서나 직접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3> 평등을 위하여!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 우리는 모두 자기나라가 가진 자원에 따라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노동할 수 있는 권리 -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 휴식 및 여가의 권리 - 쉬는 것도 중요하다! : 사람에게에는 일할 권리뿐만 아니라 쉴 권리도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쉬고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인간다운 생존을 누릴 권리 -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려야! :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특히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교육권 - 배울 수 있다! :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 문화적 권리 - 즐거운 생활! :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에 진보에 따른 혜택은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 민족이나 지역, 집단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장애인과 인권

매년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을 반성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재검토해보는 날입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선언하고 그것의 보장을 요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만 되면 정부기관도, 정치인도, 언론들도 너나할 것 없이 장애인의 인권을 수호하는 침병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1년 365일 가운데 나머지 364일 동안 장애인은 철저한 무관심과 차별, 편견, 불평등으로 상처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장애인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조건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장애 청소년이 비장애 청소년과 어울려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일년내내 고민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인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장애가 권리를 박탈하고 보장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이며 동시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의 원인별 유형을 살펴보면, 유전이나 선천적 장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무지로 인한 임신과 출산기의 부주의, 질병, 자연재해, 교통사고, 운동과정이나 가정 내에서의 불의의 사고 등이 그 원인이 된 개인적인 장애가 있는 반면에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부터 연유되는 구조적 장애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곤과 전쟁, 열악한 노동조건, 고문이나 반인도적 처벌(생체실험이나 신체절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가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인권침해의 결과로 나타난 장애입니다.

가난은 불결한 생활환경과 영양실조에 따른 질병을 부릅니다. 그 질병이 장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기에 태아의 건강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태아를 장애인으로 만들기도 하며,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질병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장애를 얻기도 합니다.

화학무기나 핵무기, 지뢰와 같은 폭발물 등 갖가지 전쟁무기는 신체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는 2세, 3세에게까지 장애를 되물림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인지뢰는

전쟁인 끝난 이후에도 민간인의 생명까지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공포는 갖가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낳습니다. 직업병도 후세에까지 유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문은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고문의 과정은 한 인간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고문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80년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 끌려가 고문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고문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벌의 하나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천재지변도 사실은 인간이 초래한 불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뭄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의 경우 우연한 불행을 당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인간이 저지른 환경파괴의 예상치 못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를 겪어 장애인이 된 사람의 경우도 우연한 불행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국가가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불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길은 곧 장애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못지 않게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갖가지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교육의 제공, 장애인의 교육의 기회 보장,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교재와 교육방법의 개발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분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승진·임금·해고 과정에서의 차별이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이 사회에서 외면당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정하는 의미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교육시설과 직장, 문화시설, 지역사회시설,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투표장소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에바다재단의 경우처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들이 실상은 장애인을 확대하고 차별하고 돈벌이에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시설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강제노역을 자행하지 않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넓혀야 합니다.

차별과 불평등은 법과 제도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하는 편견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장애인도 나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권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인권교육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정부의 공무원에게까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법률과 제도가 어떤 점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에서의 인권침해

이종민 (한국농아인협회 기획과)

1. 들어가는 말

시대가 바뀌어 예전에 비해 장애인 복지와 교육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며 작년 98년 12월 10일에는 장애인 인권헌장이 발표되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인권은 교육면, 사회면, 복지면에서 그 권리만큼 보장받고 못하고 있다. 인권이라고 말하면 거창하게 학문속이나 이론속에서 존재하는 아주 멀리 있는것 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실상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것이 인권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내가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청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소외되었으며 어떻게 권리를 침해당했었는지를 통해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II. 학교교육에서의 인권침해

확실한 나이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원인모를 열병으로 인해 청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어렸을때의 나는 무척 명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주 작은 시골에 살았던 나는 또래의 친구들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각장애에

그리 구애받지 않고 불편함도 느끼지 못한 채 잘 어울렸다. 그러다가 8세때 일반학교에 들어가고 부터는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특수학교가 있다는것조차 몰랐던 그 당시에 그 많은 친구들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말들에 적응할수 없었으며 선생님의 부정확한 입모양을 통해 매순간 긴장의 연속으로 들었던 수업은 점점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만들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받아쓰기는 나에게 적어도 앞으로의 16년간 학교교육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들리지 않는 핸드캡을 무마하기 위해 남들보다 2-3배 노력해서 공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받아쓰기가 있을때는 미리 집에서 교과서의 모든 문장을 외워야 했다. 예를 들어 "철수는 학교에 갔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선생님의 입모양을 주의 깊게 살폈다가 "철수"하고 말할 때 그 다음 문장은 외운 것을 토대로 추측을 통해 적어야 했다. 또 질문시간에는 잘 듣지 못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선생님은 내가 공부를 못하거나 지능이 좀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한다. 선생님들의 청각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그만큼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중학교 때의 영어수업시간은 그야말로 공포에 가까웠다. 읽기, 받아쓰기, 듣기평가 등 들리지 않았던 내게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환경과 실력을 요구했던 수업이 영어를 점점 멀리하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영어수업 시간이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때의 받아쓰기 처럼 영어 교과서를 몽땅 외워가서 선생님이 불러줄 때 듣성듣성 듣는 단어들을 통해 외운 것을 토대로 써야 했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선생님의 입모양을 통해 막연히 추측해서 써도 거의 반도 맞추지 못했다. 듣기 평가 때는 어디 하는지조차 몰라 답을 미리 적어 놓고 제출할 때도 많았고 영어읽기 시간때는 발음이 이상해서 혼란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실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차츰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했고 매시간 긴장의 연속이었던 영어수업 시간은 그 공포심으로 인해 영어과목이 들은 날은 학교에 가기 싫어 이유없이 아프기 시작했고 심한 대인공포증까지 걸리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때, 물상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짝보고 "애 뭐라고 하는 거니?" 하길래 다시 한 번 말했지만, 선생님은 나를 무시하고 짝보고

다시 말하라고 했을 때 매 수업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다보니 그 때부터 차츰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국어 시간에 책을 읽으면 반 친구들이 웃기 시작했고 또 발음을 잘못했을 때 친구들이 흉내내면서 웃을 때마다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적도 있었는데 발음이 잘 되지 않는 단어에 대한 심한 콤플렉스가 생겨서 그 단어만 나오면 '그 뭐지? 뭐지?' 하고 그냥 얼버무리기까지 했던 경우도 있었다. 항상 말을 할 때는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했다.

음악시간 그 자체도 공포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 시험은 참 곤욕이었다. 음악 시간에 노래 시험이나 악기 시험을 볼 때도 능력 닿는데까지 열심히 연습했지만 점수는 항상 최하위였다. 나는 발음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음악선생님은 청력이 나쁘다는 것을 전혀 못하셨고 건청인과 똑같은 능력을 요구했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영어나 음악시간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과목에 해당되었다. 그 때부터 노력해도 안된다는 사실에, 선택의 기회도 없다는 사실에, 차츰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고 심한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차별과 좌절감보다는 매순간 긴장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던 그 정신적인 고통이 더 견딜수가 없었다.

청각장애로 인해 줄곧 맨 앞 고정석에만 앉았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는 교탁 앞에서만이 아니라 앞 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럴 때 참 애를 많이 먹었다.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보지 않으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선생님의 입모양을 봐도 거의 반도 해석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보통 수업시간때 칠판에 쓰면서 설명하는 선생님이 많아 듣성듣성 들리는 소리를 통해 의미조차 모르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시간엔 항상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들리지 않는 걸까?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는 걸까?" 쓸모도 없이 붙어있는 귀가 원망스러워 차라리 귀를 떼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또는 숙제를 확인할 때 날짜 번호를 부르던가 아니면 앞 뒤 옆, 또는 줄대로 시켰는데, 매번 질문을 알아듣지 못해 대답을 잘 할 수 없었다. 그 때마다 선생님은 내가 속한 줄을 빼거나 아니면 내 번호만 빼고 시켰다. 어떨때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점점 수업시간에 소외된다는 사실과 선생님의 이유 없는 차별이 학교 생활에 더 흥미를 잃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못 듣기 때문에 배려해 준건지 아니면 매번 반복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에 귀찮아한건지 아니면 내가 청각장애를 너무 의식해서 예민하게 반응한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학생들과 나는 다르다는 생각과 선생님의 질문에 바로 바로 대답할 수 없었던 그 환경이 마치 못 듣는 것이 모두 내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눅들게 했다.

그때부터 수업시간에 소외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런 이유로 인해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숨기고 싶었다. 말하지 않으면 의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청각장애를 선생님들은 알 수 없었으므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소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를 심리적으로는 더 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남들보다 2-3배 노력 한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났었다. 청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것도 청각장애인이 된 건 내 잘못이 아닌데 사회는 마치 내 잘못인양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참을수가 없었다. 공부를 해도 안된다는 사실이 더 무력감으로 빠져들게 했으며 학교생활과 공부에 흥미를 잃고 세상을 뼈뺌하게 보기 시작했으며 모든것에 반항심이 생겼다. 나의 학교생활은 이렇게 절망과 좌절감이 무겁게 짓눌리고 있었다.

그러나 늘 이렇게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5학년때 담임선생님은 내가 청각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믿어주고 심부름도 시키고 학급일에도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또 다른면에서도 소외당하지 않게 여러모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아마 이때부터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예를 들어 토론이 있을때는 조를 짜서 책상 배치를 모두의 입모양이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질문시간이나 발표시간때도 크게 말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해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교탁 바로 앞에 앉았던 내게 또 중요한 일이나 학급회의 때도 모두의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앞에 나와서 발표를 시켰기 때문에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주셨다. 또한 무엇보다도 다른 학생들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주시므로 써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도 무난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에 다니면서 난 항상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었고 어딘가에 쫓겨 숨어 있을 청각장애인 친구들을 갈망했었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청각장애인 친구가 없었다. 마치 청각장애인은 아주 먼 우주에 있는 것처럼 내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장애인은 나 뿐이었으니 주위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해도 나는 늘 외로웠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절실히 필요했고, 그래서 건청인 친구들(소위 학교의 문제아들)과 한동안 어울려 다녔을 때, 그들과 나는 많은 면에서 관심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듣는것보다 보는것에 익숙했던 나는 신문 읽거나 책 읽기를 좋아했고 친구들은 대중가요나 듣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 친구들의 입모양을 통해 일대일 대화만 가능했던 나는 여럿이 모였을 때는 그들의 대화에 끼일수 없었다. 친구집을 방문할 때나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할 때 난 주로 책이나 잡지 신문을 읽었고 친구들은 음악을 들었는데 난 그때 친구들이 음악을 듣는 것을 싫어했다. 친구도 마찬가지로 내가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는 것을 싫어했듯이. 가식적으로 듣는척해야 한다는것이, 상황도 모르면서 친구들 눈치 따라 웃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고 가증스러웠다. 물론 그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그 당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던 내 상황이 그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또 전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들과 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대학에 간다면 공대를 가겠다고 공대에 가서 말로 하면 문자로 쓰는 전화기(현 미국의 TTY : 그당시 미국에 이미 그런 전화가 있다는걸 알지 못했다.)를 발명해서 이 땅에 전화로 인해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전화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났었던 것 같다. 물론 지금도 전화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지만 말이다.

또 다른 난청학생의 사례

일반학교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청각장애학생을 1년정도 과외지도를 했다. 이 학생은 청력이 좋아 전화도 가능하고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잘 다루었는데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크게 말하면 전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어듣기평가 점수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청력이 좋은 학생에게 FM 보청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권하였다. FM 보청기란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마이크를 끼면 (옷에 거는 아주 작은 마이크) 그 무선을 통해 보청기를 낀 학생에게 소리가 전달되는 것인데 선생님이 멀리에 있건 가까이 있건 똑같은 음량으로 소리가 전달된다. 이 학생은 선생님이 학생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소리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FM 보청기가 효과가 있었다. 선생님이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해도 수업내용을 거의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각장애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로 인해 보청기 착용을 거부한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옷에 꽃을때가 없다거나 아니면 귀찮다는게 그 이유였다고 한다. 반 친구들은 수업시간에 신경이 쓰인다는 이유로 그 보청기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때 난 학생에게 그 보청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한테 자세히 말씀 드리면 선생님도 수긍할거라고 했다. 그건 선생님이 청각장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 보청기와 너의 청력상태를 잘 설명드리면 선생님도 그 마이크를 끼고 수업을 할거라고 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씩씩했다. 내가 학교에 다니던 때의 기억들이 앨범속 사진을 보듯 떠올랐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이란 한 번쯤 거쳐야할 관문이라도 되는 듯이. 그러나 난 청각장애로 인해 그 학생도 똑같은 상처를 받는 것이 싫었고 그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이 싫어 스스로 청각장애에 대해 당당해져야 함을 강조했었다.

또 한 번은 그 학생이 선생님께 자기는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큰소리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오히려 그 선생님은 목이 아파서 그렇게 못하겠으니 내가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었다. 그 선생님의 말대로라면 이 세상의 청각장애인들은 들으려고 노력만하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결국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장애인 복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10년전에 비해 교육환경이 변했다고 하지만 청각장애인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기는 여전히 불편한게 사실이다.

III. 맺음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다고 한다. 우리 나라 헌법에도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듣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하는 청각장애인에게 과연 그런 문서속의 말들이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까?

장애인특례입학제도가 도입된지 5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 제도로 말미암아 많은 수의 청각장애인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학생이 공부하는 환경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할 뿐이다.

권리니 인권이니 복지니 하는 말을 백번 하는 것보다는 청각장애인이 1명이라도 다니는 학교에는 수화통역자나 대필자를 배치해주는 것, 청각장애인 앞에서는 입모양을 크게 그리고 천천히 말하는 것, 수화를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한가지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수화통역을 통해 본 농아인의 인권

이경례 (전남농아인협회 과장)

I. 들어가는 말

인권이라 말하면 너무 무겁고 복지라 말하면 귀찮아하는 것이 지금까지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를 외쳐온 것은 장애인들에게 어떤 시혜를 주고자 했음이 아니라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그 권리를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21세기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 정부가 마치 장애인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실시되어온 것들을 인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21세기 장애인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당국은 각 장애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사례들은 본인이 16년 이상 농아인협회에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들로써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다지 많이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것들이다.

이 사례들을 통해 한국 농아인의 인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농아인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 농아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

한지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II. 수화통역을 통해 본 농아인의 인권상황

사례1. 산재농아인 보상에 관한 건

가. 사건개요

1992년 6월 모 업체에서 작업하던 청각장애인 A모씨(여)는 일을 마무리 하기 위해 기계 밑을 청소하다가 그만 빠르게 회전하는 기계에 소매 밑자락이 말려 들어가면서 손목 전체가 끌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손을 빼내기 위해 그녀는 안간힘을 쓰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으나 주변의 기계 소음이 워낙 심하여 그녀의 비명 소리는 기계 소리에 묻혀 버린 것이다. 그렇게 20여분 정도 지났을 때 마침 기계 옆을 지나던 작업 반장이 이를 목격하여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치료 결과 그녀는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었고 손목은 신경이 늘어나서 한동안 사용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9

나. 상담내용

1차상담

회사측으로부터 청각장애인의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A모씨를 만났다. 그녀는 사고 경위를 한 손만으로 힘들게 설명하기 시작하였고 나는 그 내용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통역해 주었다. 사고 경위를 모두 전해들은 가족들은 담당 의사와 면담하여 그녀의 상태를 자세히 알고자 하였다.

A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사고 당시 절단된 손가락은 없었고 만약 잘린 손가락을 가져왔더라면 어떻게든 손가락 봉합수술을 시도했을텐데 그리하

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그 당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절단된 상태대로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은 가족들은 사고 당시 회사측의 무성의한 뒤처리에 항의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너무 급박하여 잘린 손가락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병원에 데리고 오는데 급급했다는 말만 할뿐이었다.

2차상담

A씨는 치료 후에 계속해서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잘려나간 손가락을 지금이라도 다시 찾아 수술할 수 없겠느냐며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하소연하였다.

담당 의사는 손가락 끝이 잘렸기 때문에 신경이 이미 끊어졌지만 예전의 습관대로 손가락 끝까지 신경을 따라 피를 몰고가는 것 때문에 당분간 적용하기까지는 일명 “환상통증”에 몹시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차상담

치료가 완료된 후 회사측으로부터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통역을 의뢰해 왔다. 회사로 찾아가 보니 A씨는 오빠와 함께 와 있었다. 회사측에서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상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A씨의 오빠와 나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즉,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을 위해 손으로 표현되는 수화를 이용하는데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손은 일반인의 입에 해당하고 눈은 청각장애인의 귀를 대신해 주는 것과 같으므로 청각장애인이 손을 다친 것은 비장애인이 손을 다친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는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보상금을 지급할 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다. 상담후기

마침 이 사건이 있는 지 얼마 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설명회가 열리게

되어 수화통역차 참석할 기회가 주어졌다. 설명회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노동부 관련 부서에서 오신 분께 A씨와 같은 산재사고시 보상문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당시 그 분으로부터는 보상규정의 불합리함에 대해 A씨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겠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시행 초기에 이 땅의 400만 장애우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장애우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도 않고 또 산재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취업의 문만 열어준 것도 사실이다.

A씨의 경우 만일 회사측이 A씨가 일하는 작업장 곳곳에 점멸등이라도 설치했다면 사고가 더 작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손은 단지 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즉 건청인(健淸人)에 비유하자면 입(또는 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므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장애를 대신하는 다른 신체 부위에 산재를 입었을 경우 그 보상 역시 비장애인과는 기준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례2.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된 농아인

가. 내용

B씨(남, 27세)는 부유한 농가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으나 유아기 때 청각장애를 입게 되었다. B씨의 아버지는 그를 일반학교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입학이 거절되자 그를 학교에 보낼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집안 일을 거들며 지내도록 하였다. 다행히 그는 기계 다루는데 소질이 있어 농기계 조작법을 배워 기계라면 못 고치는 것이 없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 다른 농아인과 가끔씩 접촉이 있던 그는 본회의 회원 소개로 농아인 협회 사무실을 찾아와 늦게라도 교육을 받고자 하였다.

수화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그에게 본회에서는 그를 3개월 동안 수화를 비롯하여 기초적인 단어와 문장을 학습시켰고 이후 농학교에 입학할 권

유하여 늦은 나이에 입학하였으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년이 채 못 되어 중퇴하였다.

나. 상담내용

1차 상담

그는 오랫동안 사무실에서 기다린 듯 나를 보자 무척 반가워하며 상담을 하고 싶어 찾아왔노라고 했다. 그는 수화를 능숙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농아인들과 접촉이 있어서인지 자연스런 몸짓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냈다.

그는 제스처를 통해 지금까지 문맹자로 지내오면서의 불편함과 부모님, 형제간의 갈등 등을 토해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글을 배우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잠시 망설여졌지만 일단 그의 부모님께 연락하여 상담해 본 후에 결정하자고 말하고 조만간 부모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2차상담

농번기인 봄이라서 몹시 바쁜 중에도 그가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방문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을 27세가 되도록 집안에 방치한 채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식에 대한 무관심이라기 보다 농아를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며 그를 일반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했으나 입학이 불가능하여 속으로만 애를 태웠노라고 말했다. 그 후 학령기를 넘기게 되자 학교 교육을 아예 포기했으며 그 대신 아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 예로 그의 부모님은 일찍이 그에게 농기계 다루는 소질이 엿보여 각종 기계조작법을 가르쳐서 지금은 못 고치는 농기계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의 아버지에게 B가 나이가 너무 많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

만 학습 욕구가 대단하기 때문에 한 번 성의껏 지도해 보겠다고 말한 후 앞으로 가정에서도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이 기회에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은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 지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상담자는 그에게 내일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으니 준비해서 나오라 하고 상담을 마쳤다.

3차상담

그가 아침 일찍 노트 한 권과 필기도구가 든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열기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선 그에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대해 알려 준 다음 본인의 이름을 한글과 지화로 알려 주었더니 무척 신기해하며 열심히 따라했다.

첫날이라 너무 오랫동안 하면 오히려 학습 의욕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한시간 정도로 수업을 마쳤다.

4차상담

공부를 시작한지 열흘만에 한글을 지화로 자유롭게 표현했다. 또한 사물의 이름을 수화와 함께 알려주었더니 눈에 띄게 단어 실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형용사나 부사 등 추상적인 단어는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 한계가 느껴졌다. 그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교재는 주로 유아용 그림책을 선택하여 구체적이고 단순한 것부터 지도해 나갔다. 단어 실력이 늘어갈수록 문장 교육 및 추상적인 개념 지도는 어려워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자며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다.

5차상담

현장학습을 시도해 보고자 함께 시내에 나갔다. 눈에 띄는 상황들을 수화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과 이용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즉, 은행과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설명해 주었더니 그도 매우 흐뭇해하며 눈으로 보는 것마다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질문하여 발전된 학습태도를 보여주었다.

6차상담

약 한달 동안 그는 매우 진지한 자세로 공부에 임했기 때문에 한글이나 수화 실력이 향상되었다. 기초적인 단어를 공부한 다음 숫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숫자를 외우는 것은 별무리가 없었으나 계산은 어려웠다. 처음에는 계산 도구로 바둑알을 이용했으나 자리 수가 많아짐에 따라 바둑알을 이용하는 것도 번거로워 지숫자(손가락으로 수를 표기하는 방법)로 계산하도록 지도했더니 공부가 끝난 다음 오히려 효과가 좋았다.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오목과 장기를 두고 머리를 식혀 가며 지도했다. 더욱이 국어보다는 산수를 어려워하여 숫자만 보면 골치 아프다는 표정을 짓는 그에게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일부러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또 그 무렵 함께 지도받고 있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도록 하여 학습 효과를 높였다.

그러자 다음날 그는 밤새워 숫자를 외우고 복습해 오는 성의를 보였다. 이에 대해 B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더니 그도 매우 기뻐했다.

7차상담

3개월 동안 교육한 결과 이제는 그가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했고 앞으로 협회에서 계속 지도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농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다. 또 농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찾아 뵈고 자세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의 입학을 흔쾌히 허락하여 주셨다.

그의 부모님 역시 학교에서 받아만 준다면 입학시키겠다고 하셔서 그를 설득했더니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농학교에 입학해서 지식을 쌓아야 하며 협회도 업무가 바빠서 더 이상 지도해주기 어렵고 가능하다면 학교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말하자 겨우 수긍하는 듯 고개는 끄덕였지만 그의 굳은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그후 학교에 입학하기까지 가끔씩 사무실에 들리는 그에게 수화와 글을 지도하는 중간중간에 그의 부모님과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그와 가족들간의 갈등과 오해도 풀어나갔다.

8차상담

B가 농학교에 입학한 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응을 잘하는지 어떤지 궁금하여 그의 집에 알아본 결과 염려했던대로 그는 어린 학생들 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이가 비슷한 선생님에게서 가끔 듣는 꾸중에 대해서도 몹시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두려 한다고 했다.

B는 본회 사무실에 찾아와 전처럼 협회에서 공부할 수 없느냐고 물으며 그는 학교 생활이 너무 재미없다면서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고 했다.

9차상담

오랜만에 협회에 찾아온 그는 학교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늘어 놓으며 나이가 많이들어 공부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우냐고 했더니,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조금만 더 참고 견뎌 보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 상담후기

20, 30년 전만 해도 농교육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문화혜택이 미치지 못했던 농촌에서는 농아인을 단지 교육시킬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농교육이 일반화된 현재에도 시골의 경우 이미 학령기를 놓친 성년 농아인들을 종종 보게된다.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분명히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 또는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일반학교에서는 거부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농학교도 전국적으로 21개밖에 없기 때문에 농교육을 받기위해서 장애우들은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생활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 사례에서도

만일 B가 학령기였을 때 일반학교에서 그의 입학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또 그의 가족과의 갈등도 필담으로라도 어느정도는 해소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B는 결국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퇴했다. 나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탓하기엔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컸으리라. 그래도 그는 협회를 찾아와 끝까지 다니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대신 틈나는 대로 협회에 와서 공부해도 되겠느냐며 미안한 듯이 말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하자 기뻐하며 자주 들르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

지금 그는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천에 사는 여자분을 중매로 만나 재작년에 결혼하였고, 귀엽고 예쁜 딸아이의 아빠로 부모님과의 큰 갈등없이 시골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

사례3. 경찰서에서는 범법자가 되는 수화통역자

수화통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경찰서에서의 통역이지만 또한 가장 꺼리는 것이 경찰서에서의 통역이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는 수화통역자가 단순히 통역자가 아니라 범법의 혐의가 있는 농아인과 똑같이 혐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수화통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경찰들의 무지한 행동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화통역자들은 경찰서에 가면 범법의 혐의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수화통역자가 젊은 여성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오늘은 내가 20대였을 때 경찰서에서 경험한 것을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농아복지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정도 되었을 때이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 낮익은 농아인 몇 분이 초췌한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 때 까지만 해도 극히 사소한 일로 파출소 통역은 몇번 했던 적이 있었

으나 것처럼 큰 사고로 경찰서에서 통역의뢰를 받고 가본적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서 있는 내게 형사 한 분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더니 그들을 가리키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담당형사는 곧바로 “ 그곳에 앉아서 바른대로 통역하십시오”라며 나까지 그들과 함께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기분이 언짢았지만 사뭇 위압적인 말투와 행동에 잔뜩 겁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죄명은 절도였고 체포된 농아인들외에도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순순히 자백하지 않는다면 거친 옥살을 서슴치 않았다. 또 담당형사는 내게도 조사하는 중간중간에 똑바로 통역해야지 거짓통역했다가는 공범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종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농아인들과 나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있었다.

경찰서에서의 수사가 종결지어지고 검찰로 넘어갔을 때 농아복지회 직원이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의 통역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교원자격증이 있는 농학교의 선생님께 통역을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통역내용이 조금씩 달라졌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 때 당시 농학교의 선생님과 크게 다툰 정도로 서로간에 오해를 빚기도 하였다.

나는 그 때 겨우 26세밖에 되지 않은 아가씨였지만 나 역시 농아인 가족으로 오랜동안 개인적인 통역을 해온 경험이 있기에 수화라면 어느정도 자신 있었는데 나의 통역을 믿지못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아직은 조사과정에 있는 농아인들과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요청한 수화통역자에게까지 마치 범죄자 취급하여 함부로 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미 우리의 인권은 묵살되어 있었다. 그 때 비로소 나는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요즘은 수화통역의 오랜 경험으로 어디를 가든지 장애인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할 때면 끝까지 조목조목 따져가며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끔씩 장애인복지가 잘 이루어진 선진국에 한국의 장애인복지를 비유해 가며 부러워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례4.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농아인의 3년간의 침묵

이 사례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결과는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비록 본인이 상담한 사례가 아니지만- 여기서 굳이 발표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농아인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또 그로인해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가. 내용

수감자 C는 인천출생이며 현재 49세의 남자이다. 1996년 5월 방화 및 상습적 절도죄로 재판받았으며 6월 11일 최종 치료감호조치 판결을 받아서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중이다. 그는 수감 이후 어떠한 재활프로그램에도 참여한 적이 없으며 감호소에 있는 동안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었다. 감호소의 담당의사는 3년 동안 그가 농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그가 수화와 글을 알고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나. 상담내용

1차 전화상담

1999년 4월 수감중인 농아인에게 수화와 글을 가르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감호소 담당자로부터 받았다. 간단하게 신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방문일시를 정하는 것으로 끝냈다.

2차 상담

1시간 남짓 담당의사와 대화하는 중에 그 의사는 C가 농아인이라는 것을 그동안 몰랐었고 농아인의 특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

었다.

C와의 상담시간은 10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C에게 수화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더니 그의 첫마디는 “오래되어서 수화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였다. 그리고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화로 써서 소개하였다. 간단히 고향과 가족사항 등을 묻는 것으로 그와의 1차 상담을 마쳤다.

그는 수화를 알고 있었으며 한글도 조금은 알고 있었다.

3차 전화상담

감호소의 재활 담당자로부터 C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자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5월 29일 오전 중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다. 생각해야 할 것

그는 존엄한 인격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는가?

단지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뿐이며 감호소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 인간적인 생활을 포기당해야 했다. 아무리 작은 미생물일지라도 모든 생명체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잊지 않았다면 C와 같은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담당의사는 그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일단 상담시 의사소통이 안되고 말을 안하거나 못한다고 판단될 시는 청각장애를 의심하여 수화통역자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대처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활프로그램에는 왜 참여시키지 않았을까?

감호소의 목적이 치료와 재활에 있다면 C처럼 문제를 일으키지도 말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그가 흥미를 갖는 재활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 세상 어떤 곳에서라도 C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혼자만의 욕심은 아닐 것이다.

사례5. 서용덕 교통사고사 손해배상소송 건

가. 사건개요

1989년 8월 30일 오후 5시 30분경 인천시 북구 부평동 소재 인천성동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서군은 차량 진행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한 트럭에 치어 인근 인천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서군의 아버지가 사고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 8시 30분이 지나서였다. 그 시각까지 서군은 아무런 진찰도 받지 못한 채 응급실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유인즉 진찰비를 내지 않았다는 것. 서군의 아버지가 급히 돈을 마련하여 지불을 마치자 진찰이 시작되었고 자정이 다되어 서군에게 뇌수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두 번에 걸쳐 뇌수술을 받고도 서군은 끝내 회생하지 못한 채 다음 날 31일 새벽 뇌경과열증 등의 병명으로 사망했다.

사고지점은 왕복 6차선 도로로 학교 앞임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차들의 신호위반이 잦아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이다. 서군은 이날 개학식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갑자기 내린 소낙비로 급히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나. 재판내용

서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1990년 7월

26일, 손해배상금으로 9백 80만 9천 6백 7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인천지법이 서군이 청각장애인임을 들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서군의 노동능력상실률을 90%로 적용하여 도시일용노동자 월 평균급여의 10%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서군의 가족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2심 판결 재판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비장애인 대비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의하면 100%,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90%, 미국의학협회 기준에 의하면 3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청각장애인의 교육현황 및 취업실태와 장래취업가능성,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가의 정책, 기타 제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면 서군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5%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군의 부모는 2년여에 걸친 공판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로 2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여 이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다. 생각해야 할 것

비록 본인이 통역을 담당했던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에 얼마나 무감각해 있고 장애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었기에 다시 소개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위의 재판 결과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안다.

과연 농아인의 노동상실률을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 100%,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90%, 미국의학협회 35%로 규정한 것이 타당한가?

농아인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아인들도 건청인들과 똑같은 작업환경에서 경쟁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민사사건이었기에 그나마 2심에서 노동상실률을 35%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 형사사건이었다면 청각언어장애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90% 그대로를 적용받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장애인에게 반드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해야 하는가?

물론 여기서의 노동능력이라함은 일용직근로(쉽게 말해서 막노동)를 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농아인의 경우 그 분야에서라면 어느 건청인 못지않게 능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능력이 비장애인보다 떨어진다고 정해놓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대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III. 맺음말

위에 열거한 사례들은 수천 건의 통역 경험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가지만 간추린 것이고 그 중에는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다. 위의 사례들이 인권이라는 화두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농아인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장애인고용촉진법, 편의증진법 등의 법률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정부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산업재해에도 관심을 가져서 위의 사례처럼 부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이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는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일반학교에서는 분명 법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을 알면서도 장애인 학생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있다.

더 이상 장애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부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라는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경찰, 법관등에게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그래서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편견에 사로잡힌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하지 말아야 하며 농아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경찰서로 간 수화통역인이 더 이상 죄인취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

넷째, 위의 사례에서처럼 3년동안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지 수화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면 농아인이 의사소통을 위해 C처럼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결국 농아인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은 물론 전 국민이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하며 장애인을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참 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애에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

등급	신 체 장 해	노동력 상실률 (%)
제4급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90%
제6급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자	70%
제7급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자	60%
제9급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0%
제10급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자	30%
제11급	4. 고막의 중등고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자	20%
제12급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15%

한국사회 농아인의 문화참여

강재희 (씨뿌리는 사람들 대표)

한국영화 체험

얼마 전에 우리 나라에서 한국 영화사상 최고 흥행이라는 뜨거운 화제를 몰고온 남북첩보영화 '쉬리'를 혼자서 관람해 본 적이 있었다.

물론 나와 같은 농아인들은 거의 한국영화를 안보는게 사실이다. 한국영화 수준이 낮아 너무 재미없어서 안보는 것이 아니라 대사가 자막으로 나오지 않아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지루하고 답답해서이다. 그래서 자막이 들어있는 외국영화만 선호, 관람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에서 '쉬리'열풍에 대해 집중취재하고 있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하여 호기심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관람해보기로 하였다. 역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지만, 배우들의 입술 모양을 유심히 관찰하여 대충 감을 잡아 읽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관람할 수 있었다. 영화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하지만 농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자막을 삽입했다라면 이야기 전개를 정확히 이해하여 훨씬 더 지매있게 관람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영화속에서라도 적지 않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현대의 일반인들이 영화에서 느끼는 정서도 쉽게 체험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일반인과 똑같이 관람료를 내고 영화 속에서 나온 음악, 음향효과 등을 감상할 수 없고 대사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어서 나만 불이익을 당한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있었다.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한국영화를 볼 수 없고 아예 외국영화만 보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불만과 불쾌감이 영화의 감동을 많이 떨어뜨림을 느꼈다.

이제 농아인들도 한국영화를 관람하고 즐길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영역에서 농아인이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것에 접근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으로 단지 불편함을 호소하여 관계기관과 사회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고 지켜야 한다.”는 자각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느낀다.

아마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농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문화의 세기 - 대중문화에의 접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그리고 그 문화의 세기가 코 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현대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은 ‘대중문화’라는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문화는 다음 세기에 더욱 더 심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국민의 거의 반수가 같은 시간에 같은 인기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운다. 수억명의 사람들이 같은 국제경기를 보면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같이 애를 태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같은 가수의 음악을 들으며 열광하고 엄청난 관객이 같은 영화를 보면서 같은 정서를 나눈다. 그리고 전세계 어디서나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에서 같은 정보를 나누고 서로 대화한다. 현대인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깨어있는 시간을 대중문화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다. 실로 문화없는 인류역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류의 역사는 곧 문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항상 변하고 존재하여 왔다. 과거에는 문화가 소수 귀족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도래와 함께 대중이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 대중문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대중문화 시대에 사는 우리 농아인들은 들을 수 없다는 청각장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중문화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 물론 현대의 대중문화는 저급한 상업주의와 향락적인 측면에 오염되어

있는 점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해서 농아인들은 그런 대중문화를 접하지 말아야 하는가? 물론 모든 농아인들이 이러한 저급한 대중문화까지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쉽게 접근해서 취사선택하여 건전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이다.

문화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속에 살아가는 쓸쓸한 모습이 대다수 농아인들의 어두운 현실이다. 또한 농아인의 특성상 수화를 통해 소리보다는 침묵에 익숙하게 살아온 관계로 자칫하면, 소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첨단정보화, 멀티미디어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문화 원시인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1998년에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함에 따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장애인들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활발한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편의증진법이 실시되고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방송국 3사에서는 농아인을 위해 TV 자막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전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농아인들이 여전히 청각기능상실, 이중언어의 문화, 수화통역제도의 미비, 편의시설 미비,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 등으로 인해 대중문화속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여가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를 균등하게 부여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하면서 문화와 문화활동이 주는 기쁨과 위안에서 소외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오늘의 농아인문화의 현실소이다.

문화의 시대 - 농아인참여를 위한 제언

이제 문화의 시대이자 다원화, 정보화의 시대가 된 21세기를 맞아 농아사회도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더욱 낙후되고 불편한 생활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다.

농아인들도 우리 대중문화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이며 당당한 대중문화의 소비주체로서 문화를 공유하고 누릴 권리가 있음을 부각시키며, 국가와 사회가 농아인의 문화생활 향상과 인권문제를 중시하여 농아인들이 대중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소외감없이 살아가는 기쁨을 ‘문화’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권익이 증대되고 문화생활 수준과 국민으로서의 상식적인 교양이 향상된 많은 농아인들이 대중사회에 기쁘게 참여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통합,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의 농아인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지원을 촉구하며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일반인들에게 수화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농아인이 대중문화 영역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언어의 차이 때문이다. 즉 농아인의 언어는 '수화'인데 이것은 음성언어인 국어와는 달리 시각에 의존하며 그 조어 특성이 국어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많은 농아인들이 대중문화에 접근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 문화생활 영역에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일반인들에게 수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단체, 공공기관들에 수화강좌를 개설하고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 동사무소 등 민원창구, 은행, 병원 등 고객서비스창구 등 농아인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수화가 가능한 농아인 전담직원을 배채한다면 농아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것이다.

수화의 보급은 단순히 의사소통이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효과가 있다. 수화를 통해 농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을 없애고 농아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수화통역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라도 수화통역이 필요하다면 달려나와 도와줄 수 있는 24시간 수화통역체제가 가동된다면 농아인의 문화활동 반경과 삶의 질은 월등히 높아질 것이며 사회참여에도 큰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경찰서에서 수화통역없이 조사를 받던 농아인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 변호사를 통해 석방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이는 농아인의 의사전달 수단이 수화와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볍게 여긴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이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수화를 교육 받은 농아인 전담직원이 있었다든지, 외부에 의뢰해 수화통역사가 곧바로 달려와 조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누명을 쓴 억울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요즘들어 사회구성의 가장 기초단위로서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데 농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농아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 수화를 배우지 않아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돼 가족간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서마저 농아인이 "왕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농아인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수화배우기 및 사용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농아인의 가족들이 수화를 배워 사용할 수 있으면 농아인들에게 정보습득과 대중문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둘째, 대중문화의 강력한 전달매체인 TV의 자막방송 확대와 수신기의 원활한 보급을 제안한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TV를 볼 권리를 주장하며 TV자막방송 실시운동을 성취시킨 많은 농아인과 관계자들 그리고 이를 수용해준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막없는 TV가 암흑이었다면, 자막방송은 농아인들에게 있어서 신천지, 별천지라고 표현할 정도의 기쁨이다. 그러나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자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디코더가 필요한데 이것이 내장형으로 나와 있어서 고가의 TV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는 TV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몇 달 전부터 자막방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나 자신을 포함해서 아직도 대다수의 농아인들이 구경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TV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외장형 디코더의 개발을 앞당겨야 하겠고 이를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무료보급하거나, 예산상 힘들다면 저가에 보급해주기 바란다.

또한 현재 몇 개 프로그램에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막방송을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실시해야 한다. 아침 시간대에 가정생활에 필요한 건강, 의학, 취미, 요리 등 실생활 관련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정보는 청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농아인들에게 상식과 교양의 폭을 넓혀주고 알뜰하고 윤택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에게 “바보상자”로 불리는 TV가 농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보의 보고인 “교양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편의시설의 확충과 설치를 제안한다.

복지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모대학에서 몸이 불편한 단 1명의 신체장애인 학생을 위해서 건물의 구조를 출입이 편리하도록 개선해줬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도 선진복지사회로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흐뭇함을 느꼈다.

농아인은 외모만 보면 다른 신체적인 장애가 없기 때문에 타 장애에 비해 편의시설의 필요성이 낮은 편이지만, 청각과 관련되는 일에는 심각하고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내방송만 나오는 지하철을 타본 농아인은 수시로 바깥을 보며 내릴 역을 확인하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반면, 최근 신설된 노선의 지하철을 타보면 내릴 역 안내 전광판이 얼마나 고마운 시설인지 체감해 보았을 것이다.

피자가게에서 있었던 나의 체험담을 통해 농아인들에 대한 배려나 시설이 없는 곳에서 농아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말해보겠다. 그 피자가게는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번호표를 건네받고 마이크로 자신의 번호를 부르며 피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번호를 불러도 들을 수 없었으므로 부른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건너편에 있던 건청인이 나의 번호를 보고 당신 번호를 부르니 받아가라고 알려주었고 나는 일어서서 다가가보니 이미 종업원이 나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부를 수 없었으므로 그 뒤를 따라가며 한바퀴 돈 뒤에야 나의 피자를 찾을 수 있었다. 그 덕에 주위의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만약 이 가게에 1년에 단 한명의 농아인이 찾아오더라도 그 사람을 배려하겠다는 인도주의적인,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전광판에 해당번호가 들어오는 시스템을 도입했을 지 모른다.

피자가게 하나에 너무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러한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신이 흐르고 있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외에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장애”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공중화장실에서는 노크를 해도 상대방의 반응을 알 수가 없고 반응이 없어 문을 열면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요즈음은 손으로 푹푹하지 않고 “안에 계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농아인이 안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처럼 사소하게 넘기기 쉬운 곳에서도 농아인은 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화장실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물 하나 설치하는 것도 농아인의 문화생활과 인권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 한가지, 농아인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농아인의 교통문화도 중요한 생활의 영역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설과 대응은 그대로인 것 같다.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구조 전화대는 농아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자동차의 급작스런 고장이나 사고로 시간과 생명이 위급할 때 농아인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다. 긴급구조 전화대에 팩스가 설치되고 팩스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체계가 하루속히 갖추어지기를 바란다.

일반인들이 라디오 방송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교통상황 정보를 들으며 원활하게 도로의 흐름을 탈 수 있는 반면, 농아인은 그러하지 못하다. 도로 요소 요소에 화상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농아인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는 문자단말기에 교통정보기능을 추가로 삽입하면 농아인들의 도로 교통문화는 진일보할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몇 가지 이외에도 농아인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주변에 산재해 있다.

이를 면밀히 조사해서 농아인들이 큰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등에 편의 시설을 개선, 설치하고 개선되지 않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